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
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출신 임용자의 임용기간 및 일반직 전환요건 등을 조정하고,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외무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임용자 최초 임용기간 조정(안 제9조)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2년이상으로 조정함.

나. 민간임용자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안 제9조)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하고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전환요건인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 조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

다. 민간임용자 일반직 전환대상에 외무직 포함(안 제8조, 제9조)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위해 개방형 직위 외무직 민간임용자가 전환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함.

라. 개방형 직위 자체 추천위원회 폐지(안 제22조)

운영상 실효성이 낮은 개방형 직위 자체 추천위원회를 폐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28. ~ 6.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으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2년(외무공무원은 3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22조 중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인재”를 “인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동일 개방형 직위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민간임용자 최초 임용기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생 략)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u>일반직공무원</u> 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4. ----- ----- ----- <u>일반직공무원</u> <u>또는 외무공무원</u> ----- --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같음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u>일반직공무원</u> 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 ----- ----- ----- ----- ----- ----- -- <u>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u> ----- ----- ----- ---

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 개방형 직위에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u>일반직공무원</u>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u>3년</u>에 도달하였을 것 3. (생략) ④·⑤ (생략)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소속 장관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u>자체 추천위원회</u>를 구성·운영하거나 <u>인재</u>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 <u>일반직공무원</u> 또는 <u>외무공무원</u>--. 1. (현행과 같음) 2. ----- -- <u>2년(외무공무원은 3년으로 한다)</u>-----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 ----- ----- ----- <u>인재</u>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연 락 처	(044) 201 - 8351